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관련749
----------	-------

제출년월일 : 2012년 5월 2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012년 5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 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시장은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에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변상금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사용·수익이나 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 권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인데,

- 금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개정(안) 제19조 제3항 “집단지주 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매각시 부과 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은
  - 체비지 매각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달성 보다는 집단이주 정착용 체비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매각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부기간 동안 부과되는 변상금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각시점이 5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부과기간 소멸 등으로 변상금 부과가 불가능하게 되어,
  - 정상적으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체비지 운용에 준용되었던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한 변상금 징수절차를 위반하게 됨은 물론 변상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성이 있음
- 결국 변상금의 부과시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써 변상금을 매각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이므로 재의를 요구함.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대부요율을 적용하되, 주거용 및 주거이외 용도가 혼재되어 구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구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1. 주거의 경우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하고,
2. 주거이외의 경우 대부요율은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1항 단서의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매각시 부과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